

청주지방법원 2024. 11. 20 선고 2021가합5541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계로, 담당변호사 이현, 최락구, 김지혜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남현

피 고 1. B

2. C

3. D

4. E

피고 1, 4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일진

변 론 종 결 2024. 10. 16.

판 결 선 고 2024. 11. 20.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B에 대하여 4,680,000원, 피고 C에 대하여 234,000원, 피고 D에 대하여 936,000원, 피고 E에 대하여 2,925,000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 및 원상회복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피고들과 F과의 사이에서 체결된 별지목록(1)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피고 B과의 사이에서 체결된 부분은 4,680,000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 C과의 사이에서 체결된 부분은 234,000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 D과의 사이에서 체결된 부분은 936,000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 E와의 사이에서 체결된 부분은 2,925,000원의 범위 내에서 각 취소한다.

3. 청주지방법원 G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기한 피고들의 대한민국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별지목록(2) 기재 피고별 각 배당금액 중 피고 B은 4,680,000원에 관하여 H, I, J, K에게 각 936,000원, L에게 401,142원, M, N에게 각 267,428원을, 피고 C은 234,000원에 관하여 H, I, J, K에게 각 46,800원, L에게 20,057원, M, N에게 각 13,371원을, 피고 D은 936,000원에 관하여 H, I, J, K에게 각 187,200원, L에게 80,228원, M, N에게 각 53,485원을, 피고 E는 2,925,000원에 관하여 H, I, J, K에게 각 585,000원, L에게 250,714원, M, N에게 각 167,142원을 각 양도하고, 소외 대한민국(소관 : 청주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각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들과 소외 망 F(주민등록번호 1 생략)과 사이의 별지목록(1) 기재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이를 각 취소한다. 피고들은 별지목록(2) 기재 피고별 각 배당금 채권에 관하여 별지목록(3) 기재 위 F의 상속인들의 상속지분 해당란 기재 지분비율로 각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소외 대한민국(소관 : 청주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F(2021. 7. 22. 사망)은 2016년부터 청주지역 일대에서 수십 개의 낙찰계(이하 ‘이 사건 낙찰계’라고 한다)를 조직하여 운영하여 오던 계주였는데 F이 운영하던 위 계들은 2020. 9월경

파괴되었고, F의 상속인 및 상속지분은 별지목록(3) 기재와 같다.

나. F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목록(1) 기재 1, 2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하되, 개별 부동산을 지칭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제1 부동산',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① 피고 B과 사이에 2020. 9. 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4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청주지방법원 등기와 접수 제115199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② 피고 C과 사이에 2020. 9. 16.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청주지방법원 등기와 접수 제118425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③ 피고 D과 사이에 2020. 9. 16.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8,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청주지방법원 등기와 접수 제118425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④ 피고 E과 사이에 2020. 9. 1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청주지방법원 등기와 접수 제119288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F과 피고들이 체결한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하고, 이에 따라 마쳐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진행 및 배당표 작성

F의 채권자 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O조합의 신청으로 진행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청주지방법원 G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배당기일인 2021. 11. 9. 위 법원은 피고 B에게 240,000,000원, 피고 C에게 12,000,000원, 피고 D에게 48,000,000원, 피고 E에게 150,000,00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없어 배당표가 확정되었다.

라. 선행사건의 진행경과

1) 이 사건 낙찰계의 계원인 P, Q, R, S, T(이하 '선행사건 원고들'이라고 한다)은 피고들에 대하여 피고들과 F 사이에서 체결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위 다.항의

배당표에서 피고들이 받게 될 배당액과 관련하여 이를 선행사건 원고들에게 양도하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이를 양도하였음을 통지할 것을 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2) 이에 1심인 청주지방법원 2020가단37966 판결에서는 피고 D에 대하여 위 나. ③항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배당금액 48,000,000원을 위 선행사건 원고들의 채권액 상당의 비율에 따라 선행사건 원고들에게 양도하고 이를 대한민국에 통지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기각되었다.

3) 선행사건의 원고들 및 피고 D은 각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인 대전고등법원(청주) 2022나51400 판결에서는 F이 체결한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계약 중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235,320,000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 C 사이에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11,766,000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 D 사이에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47,064,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취소하고, 피고 E 사이에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147,075,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취소하며, 위 취소 부분에 대하여 위 원고들의 채권액 상당의 비율에 따라 원고들에게 양도하고 이를 대한민국에 통지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4) 위 항소심 판결에 피고 B, 피고 E가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위 항소심 판결 중 각 원상회복 청구 부분을 파기하여 이를 대전고등법원(청주) 재판부로 환송하였으며,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23다254519).

5) 환송 후 항소심(2023나52677)은 피고 B은 240,000,000원의 배당금 채권 중 235,320,000원의 부분에 관하여, 피고 E는 150,000,000원의 배당금 채권 중 147,075,000원의 부분에 관하여 이를 F의 상속인들(L 제외)에게 양도하고, 이를 대한민국에 통지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 일련의 사건들을 ‘선행사건’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피고 D에 대하여 : 자백간주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 16호증, 을가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소 중 피고 B에 대하여 4,680,000원, 피고 C에 대하여 234,000원, 피고 D에 대하여 936,000원, 피고 E에 대하여 2,925,000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손해행위취소청구 및 원상회복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여러 명의 채권자가 동시에 또는 시기를 달리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이들 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후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동일한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 비로소 다른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84352 판결 등 참조).

경매법원이 근저당권자를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로 인정하여 배당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근저당권자가 채무자와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취소됨으로써 그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상실된 경우, 수익자인 근저당권자에게 지급된 배당금은 사해행위로 설정된 근저당권이 없었더라면 배당절차에서 더 많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다른 배당요구권자들에게 반환되어야 하고,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 및 채무자 등은 다른 배당요구권자들의 배당요구채권을 모두 충족시키고도 남는 잉여금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를 갖지 못하며, 이는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그 근저당권을 설정한 계약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자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다6042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피고 C, 피고 D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판단한다), F과, ①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235,320,000원(잔여배당액 4,680,000원)의 범위 내에서, ② 피고 C 사이에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11,766,000원(잔여배당액 234,000원)의 범위 내에서, ③ 피고 D 사이에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47,064,000원(잔여배당액 936,000원)의 범위 내에서, ④ 피고 E 사이에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147,075,000원(잔여배당액 2,925,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취소하고, 위 각 취소부분에 대하여 선행사건의 원고들 또는 F의 상속인들에게 이를 양도하며,

대한민국에 양도통지를 하라는 내용의 선행사건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선행사건의 판결 주문인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와 양도통지는 그 형식적으로는 양도 및 양도통지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그 실질은 사해행위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에 의하여 피고들이 배당받을 돈에 관한 추가배당절차를 명하는 것에 가까운 것이다.1)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배당절차에서 자신의 채권을 신고한 가압류채권자이기 때문에 앞서 선행판결에서 이루어진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에 대하여 추후 추가배당절차(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61조)가 이루어질 것이고(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다64310 판결 등 참조), 이는 채권자인 원고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의하여 승소하였는지 여부와는 관련 없이 이루어지게 된다.2) 이와 같이 원상회복(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의 복귀)가 마쳐진 이상, 추후 이루어질 배당표의 경정 등은 원상회복절차와는 별개의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추가배당에 따른 배당표 경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은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상회복이 이미 마쳐진 이상, 이를 구하는 내용의 원고의 사해행위취소청구 및 원상회복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 B, 피고 E의 항변은 이유 있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D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1) 피보전채권의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F이 원고에게 159,4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청주지방법원 2020가단142360) 및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위 판결에서의

원고의 채권은 U이 F으로부터 수령할 계금반환채권을 양수받은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들은 이와 같은 원고의 피보전채권(U의 F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허위의 채권이라고 주장하나, 이와 같이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그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인 수익자나 전득자는 그와 같이 확정된 채권자의 채권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룰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72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사해행위 인정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기초사실 등에 따르면, F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 무렵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이외에는 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F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등기를 설정하여 준 행위는 다른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F의 사해의사는 인정되며,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3)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에 의하여 수익자가 새로 저당권을 취득하였는데 선행 저당권의 실행으로 사해의 저당권이 말소되고 수익자에게 돌아갈 배당금이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 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못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인 저당권 취득의 원인행위를 취소한 후 수익자가 취득한 배당금 청구권을 채무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결국 배당금 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배당금 채권의 채무자에게 할 것을 명하는 형태가 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3494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매각을 원인으로 말소되었으며,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들에게 합계 450,000,000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가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선행사건의 원고들이 2021. 10. 25.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채권가압류결정(위 법원 2021카단51719 결정)을 받음에 따라 피고들이 위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근저당권계약 중 선행사건 판결에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3)에 대하여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범위 내에서 피고들은 배당금 채권을 F의 상속인들에게 양도하며, 대한민국에 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과 F과의 사이에서 체결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피고 B과의 사이에서 체결된 부분은 4,680,000원(240,000,000원-235,320,000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 C과의 사이에서 체결된 부분은 234,000원(12,000,000원-11,766,000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 D과의 사이에서 체결된 부분은 936,000원(48,000,000원-47,064,000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 E와의 사이에서 체결된 부분은 2,925,000원(150,000,000원-147,075,000원)의 범위 내에서 각 취소되어야 하고, 청주지방법원 G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기한 피고들의 대한민국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피고 B은 4,680,000원 중 H, I, J, K에게 각 936,000원($4,680,000원 \times 7/35$), L에게 401,142원($4,680,000원 \times 3/35$, 원 단위 이하 버림), M, N에게 각 267,428원($4,680,000원 \times 2/35$, 원 단위 이하 버림)을, 피고 C은 234,000원에 대하여 H, I, J, K에게 각 46,800원($234,000원 \times 7/35$), L에게 20,057원($234,000원 \times 3/35$, 원 단위 이하 버림), M, N에게 각 13,371원($234,000원 \times 2/35$, 원 단위 이하 버림)을, 피고 D은 936,000원 중 H, I, J, K에게 각 46,800원($234,000원 \times 7/35$), L에게 20,057원($234,000원 \times 3/35$, 원 단위 이하 버림), M, N에게 각 13,371원($234,000원 \times 2/35$, 원 단위 이하 버림)을, 피고 E는 2,925,000원 중 H, I, J, K에게 각 585,000원($2,925,000원 \times 7/35$), L에게 250,714원($2,925,000원 \times 3/35$, 원 단위 이하 버림), M, N에게 각 167,142원($2,925,000원 \times 2/35$, 원 단위 이하 버림)을 각 양도하고, 소외 대한민국(소관 : 청주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각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 B에 대하여 4,680,000원, 피고 C에 대하여 234,000원, 피고 D에

대하여 936,000원, 피고 E에 대하여 2,925,000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 및 원상회복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지현, 판사 이인창, 판사 황정환

별지

- 1) 이와 같은 판결은 그 성질상 일정한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로, 판결 확정과 동시에 그 의사의 진술이 있는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참조). 따라서 실제 채권을 양도하거나 양도통지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판결이 확정된 이상 원상회복은 이루어진 것으로 볼 것이고, 이는 선행판결에서 상속인 중 1인을 누락하였다거나(피고 B, E의 경우) 상속인이 아닌 타인에 대하여 채권양도 및 양도의 통지를 할 것을 명하였다고 하더라도(피고 C, 피고 D의 경우) 달라질 것은 아니다.
- 2) 추가배당을 구하는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추가배당사유가 생겼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면서 추가배당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고, 집행법원은 추가배당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채권자나 채무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추가배당절차를 밟아야 한다.
- 3) 위 합계액(8,775,000원)이 앞서 인정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에 미달하는 사실은 계산상 명백하다.